

## 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1년 06월 22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시간 (분)	월교습비 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 단과	중등 수학1	20	1800	350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2	20	1800	315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3	20	1800	175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4	20	960	190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5	20	1440	280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6	20	1800	350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7	20	2160	430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8	20	3840	600,000	4주	없음	0
보습 단과	중등 수학9	20	2520	490,000	4주	없음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1년 06월 22일

( )학원설립·운영자[( 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인)

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  
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  
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  
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